

평창군이효석박물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 사 경 위

가. 제안일자 및 제출자 : 2005. 10. 10 (월) 평창군수(문화관광과장)

나. 회부일자 : 2005. 10. 25(화)

다. 상정일자 : 2005. 10. 25(화) 제124회 평창군의회(임시회)

제1차조례심사특별위원회(2004. 10. 25) 상정·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김일래 문화관광과장)

가. 제안이유

- 본격적인 주 5일 근무시대를 맞아 우리군의 주요 관광시설인 이효석 박물관을 홍보하고,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각종 카드사 등과 제휴 마케팅시 요금할인 등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어 이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시 관람료의 일부 감면
- 제명 띄어쓰기 권장에 따른 제명 개정

3.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함경호)

가. 본 조례안은 우리군의 대표적 관광시설인 "이효석박물관"에 대하여 우리군과 제휴한 우리나라 최대 회원보유 카드사인 BC카드 소지자와 기타 제휴사의 마케팅시 관람료를 할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나. 제휴사의 전국 각지의 많은 회원들에게 우리군의 지원 의지를 알리고, 좋은 이미지를 보임으로 다시 찾게 하는데 기여하여 우리군이 주5일 근무시대에 앞서가는 관광 메카로 부상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 지난 8월과 9월 우리군 제휴사인 BC카드사에서 회원들(1,000만명)에게 보내는 홍보물에 한국자생식물원, 호석문화제, 대관령 양떼 목장의 사진을 함께 실은 안내문이 배송된바 있음.

다. 다만, 관람료 할인 적용방법이나 할인율에 대하여는 보다 심도있는 검토가 요구됨

라. 그것은 현재 강원도내 각 시·군과 우리군에서 시행중인 이반장,새마을 지도자 등에게 관람료 감면을 운영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감면 요율, 방법이 타당·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됨.(요율, 금액산정 등)

▶ 도내 시·군 및 우리군 관람료 감면 사례 : 불임

마. 기타 조례안의 자구, 띄어쓰기 등에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불임】 : 평창군이호석문화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